

공 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-1767호

당산제2구역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영등포구고시 제2015-112호(2015. 12. 10.)로 승인 취소한 당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 제10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보조금 지급신청 개요

- 가. 대상구역: 당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승인취소)
- 나. 신청인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주영록
- 다. 신청일: 2016. 12. 14.
- 라. 신청금액: 14,226,000원

2. 보조금 지급계획

- 가. 지급대상: 당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승인취소)
 - 이해관계자: 삼성물산(주), 주영록(신청 대표인)
- 나. 지급금액: 14,226,000원
- 다.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이체
- 라. 지급일자: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(의견접수처): 영등포구청 주택과(☎02-2670-3660)
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6-1769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에 대하여 『자동차관리법 제 24조의2 제3항4조』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공 고 명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2. 공고대상 : 03모6543 차량 외 3대

연 번	등록번호 (차대번호)	차 명	소유자	사용본거지 주소	명령일자	운행정지 명령사유
1	03모6543 (KPBNE2A41 1P017231)	체어맨	이*열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**길 *(대림동)	'16.12. 7.	소유자의 요 청
2	07구9161 (WDDUG8CB 5FA150316)	S500 L	**캐피탈 (주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**(여의도동)	'16.12.13.	소유자의 요 청
3	85주2072 (KMFCA19YP TC100361)	현대16톤 카고트럭	이*철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**나길 *(신길동)	'16.12.13.	소유자의 요 청
4	37보3896 (KPBFA2AD1 5P387345)	무쏘	홍*오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***나길*(영등포동)	'16.12.16.	소유자의 요 청

3. 공고내용

-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,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.
-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 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문 의 처 :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(☎ 2670-4284)